

1. 업무개요

■ 목적

- 산학협력단 업무에서 발행하는 원천세 신고(근로소득, 기타소득), 부가가치세 신고, 법인세, 공인법인, 기부금명세서 등 각종 세무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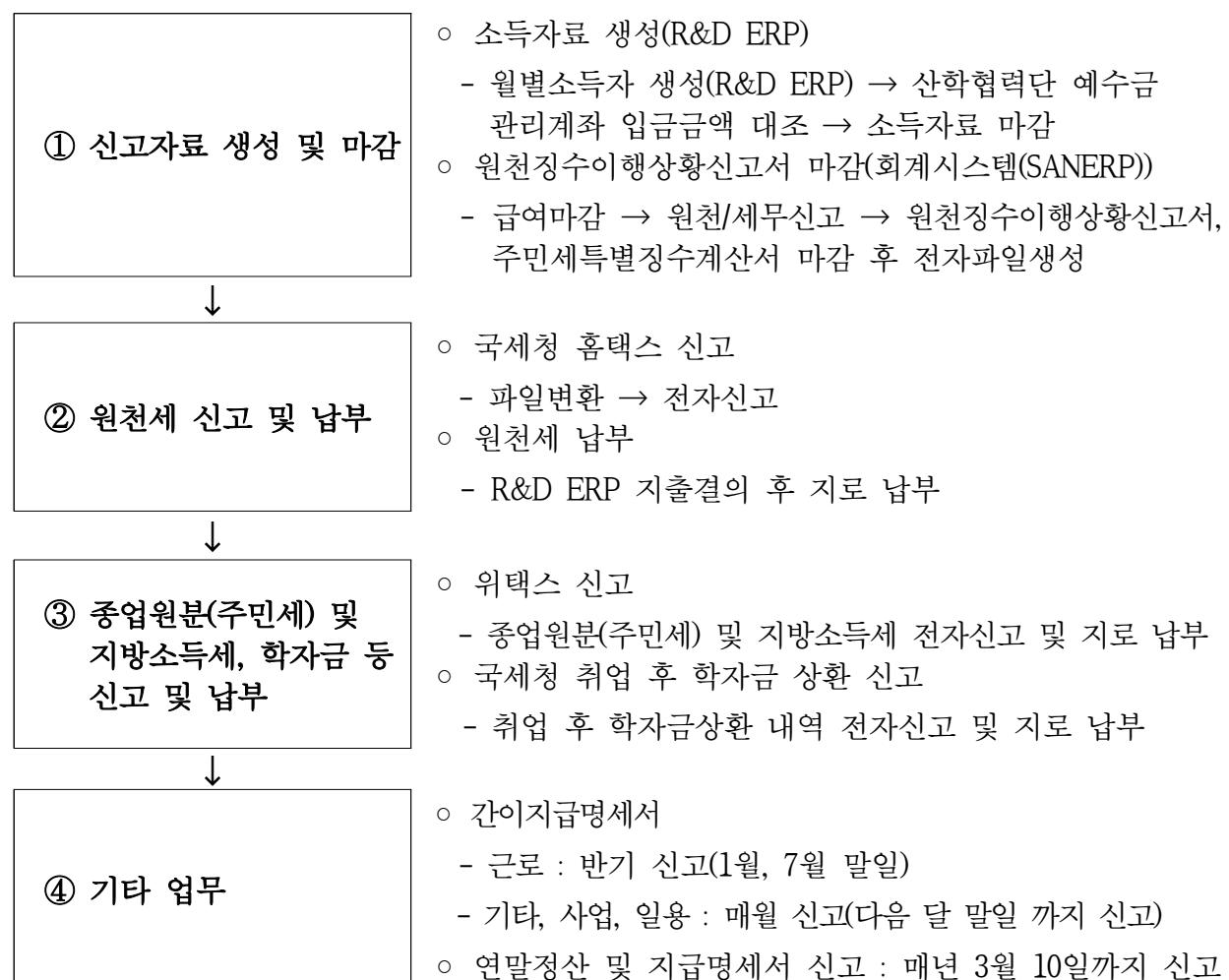
■ 시기 : 연중(매월 10일, 분기별 25일, 매년 5월 31일, 6월 30일, 8월 31일)

■ 관련법령 또는 근거 : 소득세법, 법인세법, 부가가치세법

■ 관련부서 : 연구지원1,2팀

2. 업무흐름도

■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절차



3. 주요내용

■ 신고자료 생성 및 마감

- (R&D ERP) 보험세무에서 월별소득자생성 → 산학협력단 예수금 관리계좌에서 입금내역 확인→ 담당자 확인 및 마감
- (SANERP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주민세특별징수계산서 생성 → 신고자료(근로소득, 기타소득, 퇴직소득 등) 금액 대조 → 마감 → 신고파일 생성

■ 원천세, 학자금 원천공제 신고 및 납부

- (국세청 홈택스) 원천세 파일변환 → 전자신고 제출
- (국세청 위택스) 종업원분(주민세) 및 지방소득세 자료 입력 → 전자신고 제출
- (취업 후 학자금 상환) 원천공제 상환금 신고 → 전자신고 제출
- (KORUS) 원천세 및 학자금 원천공제 신고 내부 결재→(R&D ERP) 납부금액 자금대체결의서 작성 및 결재(지로 납부)

■ 국세청 홈택스 세무신고

-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: 분기별 25일(1월, 4월, 7월, 10월)
- 법인세 : 매년 5월 31일 까지
- 공익법인신고 : 매년 6월 30일 까지
- 기부금명세서신고 : 매년 8월 31일 까지

4. 업무처리 유의사항

■ 세무신고 및 납부

- 세무신고 및 납부의 경우 정해진 신고기한 내 신고 및 납부 완료 될 수 있도록 기한 엄수(신고 및 납부기한 초과 시 가산세 발생)
 -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: 미납세액 \times 3% + (과소·무납부세액 \times 22/10,000* \times 경과일수) \leq 50%
 - 부가가치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 : 미납세액(초과환급세액) \times 경과일수 \times 10/100,000
 - 법인세 무신고 가산세: 무신고 납부세액 \times 20%
 - 공익법인 감사보고서 미제출 가산세 : (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+출연재산가액) \times 0.07%